

자체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한국문화재재단]

2016. 9.

문 화 재 청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목적	1
2. 감사대상기관	1
3. 감사중점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1. 계약에 관한 사항(주의)	3
2. ‘한국의집 고품격 공간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시정)	6
3.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시정)	8
4. 계약 후 정산에 관한 사항(시정)	9
5. 온라인 판매 쇼핑몰(KHmall)운영에 관한 사항(권고)	10
6. 문화유산채널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사항(권고)	12
7.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기예능 공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14

8. 경력환산율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15
9. 징계양정기준 보완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17
10. 항공마일리지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제도상 개선요구)		19
11. 한국문화재단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통보)		21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한국문화재단은 2014. 7월에 감사를 실시한 후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약 600억 원의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 국고보조, 위탁사업, 국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대상기관

이번 감사는 한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감사중점

기구 현황은 9부서 25팀 (정원 251명, 현원 185명)이고, 2016년 예산은 658억(국고보조 78억, 국고위탁 199억, 보호기금 122억, 관광기금 20억, 자체 239억)으로 이번 자체종합감사에서는 문화재 발굴조사·연구,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지원 및 활용, 문화유산 활용 및 고궁관광자원화, 국유재산 관리, 주요 계약체결 등 기관운영 전반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6. 5. 16 ~ 27.까지 총 10일간 감사인력 3명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화재청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6. 9. 12.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 명세 : 별첨

한국문화재단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가. 회계연도를 초과한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 관련

한국문화재단 「예산회계규정」 제3조(회계연도)는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8조(예산의 이월)는 매 회계연도 집행예산은 익 년도에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명시 이월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인 '14.12.31.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 하여야 함에도 '14.10.31.~'15.3.31.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등 '14~'15년 기간 중 총 7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시행하였다.

〈표-1〉 회계연도를 초과한 계약현황(2014 ~ 2015)

계약 방법	건 명	계약금액 (천원)	납품기한	용 역 자		주관부서
				상호명	성 명	
수의	20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29,000	2014.10.31~2015.3.31	(주)○○○○○	도☆☆	기획조정실
공개	「울산 하삼정 고분군 VIEWMIX」보고서 발간 용역	85,960	2014.11.7~2015.1.31	●●문화사	이○○	문화재조사연구단
수의	재단 수익형 홍보물 제작	19,500	2014.12.1~2015.2.28	▷▷▷디자인	홍◆◆	기획조정실
수의	2015년 홈페이지 및 공연예약발권시스템 유지보수	14,000	2015.1.25~2016.1.24	♥♥♥♥(주)	강□□	한국문화의집
수의	2015년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21,681	2015.2.1~2016.1.31	(주)◆◆소프트	이▽▽	기획조정실
수의	2015년 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3,000	2015.2.14.~2016.2.13	(주)●●●●●	이♠♠	기획조정실
공개	2015년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0,208	2015.3.2~2016.3.1	■■■■전기통신공사	김●●	기획조정실
	7건	233,349				

나. 제안서 평가 후 계약체결 지연 및 용역 사전 시행 관련

「한국문화재단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기준」 제13조(기타 사항)는 해당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3조(협상기간)에 따라 협상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국문화재단은 자체 「예산집행지침」 1. 기본지침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따라 계약을 수반하는 예산집행의 경우 부서의 사전발주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의 작품을 전시하는 ‘2015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작품전’을 ‘15.9.18.~’15.9.28. 기간 중 가나인사이트센터에서 개최하며 이를 위한 설계 및 설치에 대해 (주)▶▶▶와 계약(계약기간 ‘15.9.17. ~’15.9.30.)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해당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제안서 평가(‘15.7.27.) 후 (주)▶▶▶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면 15일 이내 해당 업체와 협상을 완결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부서인 공연전시팀은 ① 최종 협상을 ‘15.9.15. 완결한 후 계약 부서에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② ‘15.9.15. 계약 체결 요청 전인 8월 초 해당 업체에게 전시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하도록 지시하여 결과적으로는 부서의 사전발주 후 계약을 시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계약 체결 시 회계연도 내 계약체결 준수 및 계약 전 사업을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시 정 요 구

제 목 ‘한국의집 고품격 공간 조성공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 「예산회계규정」 제64조(계약의 원칙)는 계약업무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는 감독·검사공무원은 감독·검사의 결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에서는 ‘한국의집 고품격 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주)○○○과 계약 체결(888,647천 원)하여 2014.7.21.~8.13.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자체종합감사 기간 중 상기 공사에 대해 현장을 확인(2016.5.23.)한 결과 한식 굴뚝시공 공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일부 물량이 부족하게 시공되었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비교 현황】

(단위:원)

구 분	규격	당 초			변 경			증감	변 경 사유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금액		
계				11,315,375			3,263,300	- 8,052,075	
문양쌓기 (십장생)	북 잡	4.38㎡	756,935	3,315,375	2개	356,650	713,300	- 2,602,075	인테리어용 패널로 시공
굴뚝 기와 (연가)	한식형	16개	425,000	8,000,000	6개	425,000	2,550,000	- 5,450,000	일부 미시공

공사시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물량의 증감으로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하여야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지급함으로써 인해 공사비를 재산정한 결과 9,387,970원(원가계산 적용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주)○○○에 부족 시공 액 9,387,97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시 정 요 구

제 목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에서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발굴조사비용의 지원으로 서민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해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문화재청(발굴제도과)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위탁금(매년 약 90억 원)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 발굴사업 완료 후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 관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이 완료되어 상기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2016.5.27.일 이전까지 시행한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 자체 종합감사기간 동안 관련 공부확인,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을 거쳐 당초 지원기준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13건 219,599,940원 (연면적 초과 및 건축주 변경 등)이 확인되었다.

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업무 매뉴얼」 관련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업무매뉴얼(2014.7.31./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제5장 제10조(조사비용의 환수)에 따라 2~3년 이내에 용도변경, 증축, 합필, 매매, 미착공한 경우에는 조사비용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 기준이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지원기준을 위반한 13건에 대해 지원금 219,599,940원을 환수하시고 정기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매뉴얼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 후 정산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 「예산회계규정」 제70조(계약의 감독)·제71조(계약의 검사)·제77조(계약금액의 조정)는 계약이 체결된 후 감독담당은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기타 관련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고, 검사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울산 하삼정 고분군 7·8·9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에 대해 ○○문화사와 용역계약(계약기간 ‘14.11.7.~’15.1.31./계약금액 85,960,000원)을 체결하였다.

한국문화재단의 감독·검사자는 해당 보고서의 최종 발간 면수가 아래와 같이 당초의 계약내용보다 미달되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런 조치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정당하게 계약을 완수한 것으로 처리하여 규격 미달에 대한 정산대금 11,886,460원을 과 지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울산 하삼정 고분군 7·8·9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계약의 규격미달 현황

구분	계약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계약자	지체 및 규격미달 등 현황	환수대상금액(원)
용역	울산 하삼정 고분군 7·8·9	‘14.11.7.~’15.1.31. 85,960,000원	○○문화사	보고서 규격 미달 (532page 감소)	11,886,460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문화사에 과다 지급한 11,886,460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권 고

제 목 온라인 판매 쇼핑몰(KHmall) 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은 자체 개발한 문화상품 등의 온라인 판매를 위하여 KHmall (khmall.or.kr)을 2011년부터 운영하며, '16년 5월 감사시점 현재 현장 판매하는 4,000여 품목 중 302개 품목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에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KHmall 판매실적은 2014년 최고 실적을 달성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6년의 경우 4월까지의 판매실적은 월 평균 9건, 166만 원에 불과하다.

연 도	2013	2014	2015	2016(추정치)
주문건수	354	363	209	108
순 매출액(원)	38,419,790	45,132,250	33,706,830 *14년 대비 75%	19,923,900 *14년 대비 44%

* 2016년 추정치는 2016년 4월까지의 실적(36건, 6,641,300원)을 기준으로 작성

상기와 같이 해당 KHmall의 판매실적은 '14년 대비 44%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 ① 2016년 1월 업무 조정 이후 해당 사이트에 대한 별도 운영자가 없음
- ② 온라인 판매 상품의 다양화 등으로 구매 수요를 제고하여야 함에도 '14년~'15년 자체 개발상품 62품목 중 33품목을 KHmall에 미등록하였고, 수탁 상품의 경우 3,500여 종 중 200여 종 만을 KHmall에 등록 판매함
- ③ 2015년 2월 이후 별도의 특별 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음
- ④ 일부 품목의 경우 적립금 표기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 등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리가 미흡 등

한국문화재단은 KHmall을 통한 문화상품의 판매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미흡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KHmall의 운영을 위한 별도 운영자 지정 및 판매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권 고

제 목 문화유산채널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은 문화유산채널을 운영하며 2014년~2015년 기간 중 ‘문화유산 채널 UHD 동영상콘텐츠(겨울철새)’ 등 총 10건 241편의 동영상콘텐츠를 발주하여 외주에서 제작(총 861,710천 원)하였다.

한국문화재단은 2015년 ‘문화재 속 과학이야기’를 주제로 각각 10분 분량의 동영상 총 15편을 ‘◆◆◆◆◆’과 계약을 체결하여 아래와 같이 동영상을 제작 하였다.

〈표-1〉 2015년 이야기 문화유산(문화재 속 과학이야기) 동영상 콘텐츠 제작 현황

	제목	기존 촬영년도	기존 촬영사
1	임진왜란의 숨은 병기 ‘승자총통’	2013년	○○○TV코리아
2	건축 신기재의 기적 ‘수원화성’	2010년	●●●●●/3편
3	조선 정밀기술의 완전체 ‘자격루’	2013년, 2014년	■■■스튜디오, 0U■■■
4	조선의 갑옷 ‘두정갑’	—	
5	조선의 바다를 지키다 ‘거북선’	—	
6	세계 최초의 우량계 ‘측우기’	—	
7	금관을 지켜라! ‘신라 돌무지덧널무덤’의 비밀	2012년	●●●●●/4편
8	‘첨성대’ 1400년의 증언	2010년	●●●●●
9	‘직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담다	2012년	미디어▲▲
10	청동기 시대의 미스터리 ‘다뉴세문경’	2011년	●●●●●
11	‘무구정광대다라니경’ 1000년의 비밀	—	
12	전설의 구들 칠분사 ‘아자방’	—	
13	전설의 소리 ‘선덕대왕신종’	2010년	●●●●●
14	선사시대 비밀의 문 ‘고인돌’	—	
15	한국인의 ‘화회탈’	—	
	15편		

그러나 상기와 같이 '15년에 제작된 15편 동영상 중 '자격루'(1편)의 경우 유사한 주제로 2013년(스톱), 2014년(0U●●●) 동영상이 제작되어 문화유산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있으며, '첨성대' 등 7편의 경우에도 2010~2013년까지 동일한 대상으로 제작한 동영상이 제공되고 있는 등 동일 대상·유사한 내용의 동영상이 존재하였으면 해당 대상에 대한 재촬영보다는 새로운 대상에 대한 촬영을 시도함이 타당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향후 동영상 콘텐츠 제작 시 기존에 촬영된 대상은 재촬영이 최소화 되도록 주제 및 대상 선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기예능 공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번지 / 지하 4층, 지상 9층 / 연면적 13,478.75㎡)은 2016년 현재 ㉠㉡㉢ 등 20개 공방(예능 8, 공예 12개 단체) 및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동 입주 기관은 전수교육관 개관 초기부터 입주한 단체로 입주 이후 변동사항은 없다.

국가에서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입주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입주한 12개 공예 공방 중 ‘△△△’ 등 4개 종목이 보유자 사망 후 해당 종목의 전수 조교가 동 공방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1개 종목은 같은 종목의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용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입주하고 있는 공방의 활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 등 4개 종목의 경우 연간 사용일 수가 60일 내·외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목적에 합당한 실적이 없음에도 매년 공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공방 입주 수요 발생 시 입주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경력환산율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0조(임용자격의 기준)는 직원의 직종·직급별 임용 자격기준에 대하여 직급별로 경력 등을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경력 산정을 위한 경력환산율을 [별표3] 으로 정하였다.

〈별표3〉 경력 환산율 표

근무기관 구분	산 정 비 율	비 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군 경력 포함)	근무 년 수 의 100%	
2.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단체	근무 년 수 의 100%	
3. 본 재단과 업무유사 단체	근무 년 수 의 100%	

<생 략>

한국문화재단은 경력직 직원 등의 채용 시 상기의 규정에 따라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보유 여부를 판단하여 채용을 결정하고, 경력의 산정 시 상기 규정에 따라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재단과 업무유사 단체’의 경우 근무년 수의 100%를 경력으로 인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 내 ‘업무유사 단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용 절차 중 응시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경력 응시자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규정」 내 ‘업무유사 단체’가 명시되도록 해당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징계양정기준 보완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 「인사규정」 제49조(징계의 양정)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4>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는 가벼우나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는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 임 정 직	정 직-감봉 감 봉	견 책 견 책
<생 략>				
6.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사회 통념 상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나, '16년 5월 감사시점 현재 한국문화재단의 징계양정기준은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공금횡령·유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구체적 징계양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엄중한 징계가 요구되는 공금횡령·유용 및 성희롱·성매매 등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직무태만 행위보다 과소한 징계를 하여야 하는 등, 엄중한 징계가 필요한 비위 유형에 대한 구체적 양정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 양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인사규정」 내 '성희롱·성매매'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중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제도상 개선요구

제 목 항공마일리지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 「여비규정」 제7조(국외여비)는 국외여행 시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여행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14년~'16년 4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총 723,689점의 항공마일리지를 획득하였다.

* '16년 대한항공의 일반석 마일리지 이용가능 기준 : 국내선 10,000마일리지, 일본·중국 30,000마일리지, 동남아 40,000마일리지 / 왕복 기준임.

〈별표4〉 타 공공기관의 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

구 분	규정마련 등	활용 등
한국관광공사	여비규정 명시	분기별 마일리지 확인
예술의 전당	별도규정 없음	우선사용 독려
영화진흥위원회	별도규정 없음	마일리지 대장 작성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비규정 명시	출장 후 마일리지 확인
대한체육회	여비규정 명시	마일리지 적립 활용
체육진흥공단	여비규정 명시	마일리지 적립 활용

상기와 같이 타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공무국외여행 시 우선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마련·활용하고 있으나, 한국문화재단은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에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실적 또한 없어 항공마일리지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은 「여비규정」 내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재단

통 보 요 구

제 목 한국문화재단 자체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한국문화재단

내 용

한국문화재단 「감사규정」 제4조(감사의 종류)에 따르면 감사는 정기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하고 정기 감사는 매년 감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같은 규정 제23조(감사결과 공개)에 따라 감사결과는 전 부서에 공개하여 감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인력은 총 3명(감사실장 포함)으로 감사대상 인원은 337명(정규직 185명, 무기 계약직 78명, 비정규직 74명), 1인당 감사인력이 수행하는 평균 인원수는 0.89명이다.

한국문화재단은 2014~2016. 4월까지 청구서 및 클린카드 집행실태 점검 및 현황분석 등 총 7회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정기 감사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자체 「감사규정」에 의한 처분요구 현황은 총 42건으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4~2016.4월까지 한국문화재단 자체감사 실시현황】

연도별	감사구분	감사실시 내용	감사기간	처분내용
총계	7회	총 42건 / 개선13, 통보17, 시정2, 주의1, 권고9		
소계	4회			개선7, 권고9, 통보6
2014	특정감사	규정의 적정성 및 각부서에서 제정·운영되고 있는 지침 현황분석	2.24.~3.28.(25일)	개선3, 권고1, 통보1
2014	특정감사	특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현황 파악 및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7.10.~7.31.(16일)	개선2, 권고1, 통보2
2014	특정감사	출판 및 회화관리 현황 문화상품 재고관리 현황점검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도출	9.5.~10.15.(25일)	개선1, 권고5, 통보2
2014	특정감사	기능 및 오류사항 점검 등을 통한 효율적 활용방안 도출	11.12.~12.09.(20일)	개선1, 권고2, 통보1
소계	3회			개선6, 통보11, 시정2, 주의1
2015	특정감사	여비규정의 준수 및 관리실태 전반	4.1.~5.7.(25일)	개선2, 통보1, 시정2, 주의1

2015	특정감사	청구서 및 클린카드 집행실태 점검 및 현황분석	8.27.~10.13.(30일)	개선2, 통보7
2015	특정감사	전도금 집행실태 점검 및 현황분석 불합리한 사항 개선 등	11.9.~12.4.(20일)	개선2, 통보4

한국문화재단재단 특정감사 처분요구서 중 “규정의 조항 간 모순” 및 “문화상품 관리 지침 수정 보완” 등은 행정상, 제도상 모순으로 「개선」으로 처분 요구하여야 하나 「권고」로 처분하였고, “매장 창고 및 보관 상품에 대한 보관관리 부실”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여 「시정」 조치하여야 하나 「통보」로 처분요구 하고 있어 자체 「감사규정」 “처분요구 종류 및 기준(별표1)”에 맞게 처분요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문화재단이사장은 재단 「감사규정」에 따라 자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시고, 처분요구 시 ‘자체감사 처분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합당한 감사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